

의안번호	2209407
의 퇴 인	민형배 의원
회 답 일	2025.07.04.
추계번호	25C195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노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9조 (평생교육진흥기 본계획의 수립)	(제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u>7.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u> 8. (현행 제7호와 같음)	의무규정
3	안 제19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4항)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u> 4. ~ 13. (현행과 같음)	의무규정
4	안 제20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제2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의2. (현행과 같음) <u>3의3.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u> 4. ~ 9. (현행과 같음)	의무규정
5	안 제21조 (시·군·구평생학 습관 등의 설치· 운영 등)	(제3항)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의2. (현행과 같음) <u>1의3.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u> 2. ~ 6. (현행과 같음)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 계획의 수립)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9조 (국가평생교육진흥 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20조 (시·도평생교육진흥 원의 운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21조 (시·군·구 평생학습 관 등의 설치·운영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① 「평생교육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 의무를 명시하고(안 제5조), ②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안 제9조), ③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규정함(안 제19조 내지 제21조)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범위 변경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안 제5조) 개정안에 근거하여 노인 대상 평생교육 사업이 신설·확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사업의 신설·확대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
 - (안 제9조) 현행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해 수립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 교육부장관은 5년 주기로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이 수립된 상태임
 - 해당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은 고령층 대학 전담과정의 개설·운영, 고령층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을 추진사항으로 하고 있음¹⁾
 - 참고로, '18년 수립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역시 고령자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상담사·지도사 양성, 노년층 대상 학위과정 확대 등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²⁾
- (안 제19조 내지 제21조) 개정안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추계가 곤란함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25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52억 9,800만원을 출연함
 - 「2024년 평생교육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각각 31개, 2,270개임
 - 개정안에 근거하여 신규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의 내용, 대상 인원 등 이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함
 - 참고로, 교육부는 '25년부터 기존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내역사업으로 노인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하였으며, '25년 예산을 기준 17억 6,400만원이 편성됨³⁾
- * [참고자료] 노인 대상 평생교육 관련 통계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1)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 (2022.12.), 39-41p.

2) 교육부,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 (2018.2.), 19p.

3) 해당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노인 대상 평생교육 관련 통계

구분	시설 수(개)			노인 대상 프로그램 수(개)			노인 학습자 수(명)		
	시·도 평생교육 진흥원	평생 학습관	소계	시·도 평생교육 진흥원	평생 학습관	소계	시·도 평생교육 진흥원	평생 학습관	소계
서울	1	81	82	5	613	618	78	32,506	32,584
부산	1	31	32	—	64	64	—	2,046	2,046
대구	1	14	15	—	62	62	—	1,712	1,712
인천	1	26	27	—	105	105	—	2,022	2,022
광주	1	21	22	2	55	57	154	1,707	1,861
대전	1	17	18	—	24	24	—	652	652
울산	1	6	7	—	14	14	—	272	272
세종	1	1	2	22	—	22	191	—	191
경기	1	93	94	—	380	380	—	15,563	15,563
강원	1	35	36	—	109	109	—	2,116	2,116
충북	1	24	25	—	42	42	—	961	961
충남	1	34	35	—	482	482	—	11,686	11,686
전북	1	24	25	—	45	45	—	1,110	1,110
전남	1	30	31	—	72	72	—	1,754	1,754
경북	1	33	34	—	140	140	—	3,383	3,383
경남	1	39	40	1	58	59	8	1,389	1,397
제주	1	8	9	1	5	6	14	271	285
총계	17	517	534	31	2,270	2,301	445	79,150	79,595

주: 1. 2023.12.31. 기준 자료임

2.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통계에 포함됨

자료: 「2024년 평생교육통계 자료집」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